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2. . . .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10조 1항 조문과 1항 단서 신설이 호응되지 않아 1항 단서 신설 부분을 2항으로 하고 2항 전단에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넣어 조문이 호응되도록 정리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0조 1항 단서 신설 내용을 2항으로 하고, 개정안 2항은 3항으로 한다.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
과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
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
무국외출장 결과를 대면
또는 서면 보고하여 출장
의 적정추진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
장 이후 처음 개최되
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
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처
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
서 직접 발언하게 하여
야 한다.

<삭 제>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 .<단서 삭제>

<p>③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p>
---------------	-------------------	-------------------------------------------------------------------------